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15
----------	-----------

제출연월일	2010. 4. 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569호, '09.4.1 공포)으로 법률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소관 위원회의 명칭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종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으로 이관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목적조항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함(안 조례 제명, 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명 변경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인용법령 제명 변경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도로명주소법」

나.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절차,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관계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함

-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과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6조, 제7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절차와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와 영 제12조의2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기준과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대장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3조, 제14조)
-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와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9조, 제20조)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26조)
- 그 밖에 삭제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별지서식을 삭제함(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 포함) 시 제작 비용의 산정기준과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내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고시하고, 군 수입증지로 징수함

라.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의 관리·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함

마.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도록 함
-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음

바. 법령 개정으로 종전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9장(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그 밖에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변경함  
(안 제12조, 제6장 제목,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도로명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의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본예산 1,680천원(운영수당)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2. 1. ~ 2010. 2.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으로 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로,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로,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수가 고시하되, 제작 비용의 산정은 군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 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4장(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도로명사업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 “법 제13조제2항”으로, “건축물 등”을 “건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 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시설”을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도로명 관련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 시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 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을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화 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을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로 한다.

제9장의 제목 “거창군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을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위촉위원이”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진행사항”을 “심의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u></p> <p>제1장 총칙</p>	<p><u>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도로명주소법</u>」 ----- ----- ----- -----.</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도로명주소</u> ----- 「<u>도로명주소법</u>」 (이하 “법”이라</p>
<p>(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u>같은 법 시행규칙</u>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p>	<p>한다), -----, <u>같은 법 시행규칙</u>(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u>도로명주소대장</u></p>
<p>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규칙</u>」 및 「<u>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u>」 ----- -----.</p>
<p><u>제2장 도로명의 변경</u></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p>	<p>&lt;삭 제&gt;</p>
<p>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p> <p>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p> <p>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p> <p>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p> <p>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p> <p>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p> <p>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군수의 의견</p> <p>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를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⑤ 군수는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4항을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제4항을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⑦ 군수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군수는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li> <li>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li> <li>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li> <li>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의 고지는 해당 마을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p> <p>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대로와 노외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p> <p>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p> <p>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p> <p>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제6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① ---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u>경우에만 해당한다</u>),  <u>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u> -----            -----            -----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            ----- <u>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수가 고시하되, 제작 비용의 산정은 군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p>
<p>&lt;신설&gt;</p>	<p>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한다.</p>
<p>&lt;신설&gt;</p>	<p>제8조의2(원인자 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p>
<p>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p>	<p>&lt;삭제&gt;</p>
<p>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② 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 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인가서</li> <li>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li> </ol>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li> <li>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li> <li>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li> <li>4. 도로명시설을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li> <li>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자체 제작·설치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p> <p>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p> <p>제11조(법에 따른 ----- ----) ----- ----- 법----- -----, 법----- ----- 관계 법령에 따라 ----- ----- -----.</p>

현행	개정안
<p>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도로명주소 -----) ① ----- ----- ----- ----- ----- 도로명주소 ----- -----.</p> <p>② 도로명주소 ----- ----- ----- -----.</p>
<p>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군수는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거창군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제6장 <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u>	제6장 <u>도로명주소시설</u> -----
<p>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u>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u>에 따라 연 1회 이상 <u>도로명시설</u> 등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에는 <u>법 제16조제2항</u>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u>건축물</u>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u>법 제4조</u>에 따라 훼손·망실된 <u>도로명시설</u>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p>	<p>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u>법 제13조제2항</u>----- ----- <u>도로명주소시설</u> ----- ----- <u>건물등</u>-----.</p> <p>② ----- <u>도로명주소시설</u>----- -----.</p>
<p>제16조(<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u>) ① 군수는 <u>법 제13조 및 영 제17조</u>에 따른 <u>도로명사업</u>에 따라 설치된 <u>도로명시설</u>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최근 <u>3년</u>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u>도로명 관련시설</u>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p>	<p>제16조(<u>도로명주소시설</u>-----) ① --- <u>법 제13조 및 영 제17조</u>에 따라 <u>도로명주소시설</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3년</u> 이내 ----- <u>도로명주소시설</u>----- -----</p>

현행	개정안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u>도로명시설</u>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로명시설</u>의 종류, 수량, 위치</li> <li>2. (생략)</li> <li>3. <u>도로명시설</u>의 관리 및 정비계획</li> <li>4. <u>도로명시설</u> 일제조사 계획</li> <li>5. <u>도로명시설</u>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li> <li>6. <u>도로명시설</u>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li> <li>7. (생략)</li> </ol>	<p>② ----- <u>도로명주소시설</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로명주소시설</u>-----</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도로명주소시설</u>-----</li> <li>4. <u>도로명주소시설</u>-----</li> <li>5. <u>도로명주소시설</u>----- -----</li> <li>6. <u>도로명주소시설</u>----- -----</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제17조(<u>도로명시설</u>의 점검) ① 군수는 <u>도로명시설</u>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u>도로명시설</u>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u>도로명시설</u>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7조(<u>도로명주소시설</u>-----) ① ----- ----- ----- <u>도로명주소시설</u>----- -----.</p> <p>② ----- <u>도로명주소시설</u>----- ----- ----- -----.</p>
<p>제18조(<u>수탁자</u>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u>도로명시설</u>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8조(<u>수탁자</u>의 지도·감독) ----- ----- <u>도로명주소시설</u>----- -----.</p>

현행	개정안
<p>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p> <p>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마감일 10일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li> <li>2.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종류, 제작수량</li> <li>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li> <li>4. 광고사업 참가자격</li> <li>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li> <li>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li> <li>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li> <li>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li> <li>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p> <p>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광고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li> <li>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li> <li>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li> <li>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li> </ol> <p>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⑤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p>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u>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u>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u>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 시설 설치</u></p> <p>2. (생략)</p> <p>3. 산하기관, 군내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u>생활화 촉진</u> 사업 지원</p> <p>4. 그 밖에 군수가 <u>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u>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p> <p>제23조(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시책 추진) ----- <u>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u> -----</p> <p>1. ----- <u>도로명주소안내도</u> ----- <u>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u></p> <p>2. (현행과 같음)</p> <p>3. ----- <u>사용 촉진</u> -----</p> <p>4. ----- <u>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u> -----</p>
<p>제9장 거창군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p> <p>제24조(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현행	개정안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p> <p>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p> <p>3. 거창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p> <p>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관계 공무원</p> <p>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군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 ----- 경우에는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p> <p>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p> <p>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p> <p>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lt;삭 제&gt;</p>
<p>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 ---- 의결--.</p>
<p>④ 제26조의 심의사항에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토의 및 진행사항</p> <p>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p> <p>5. (생략)</p>	<p>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30조(회의록의 작성) ----- -----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심의결과</p> <p>&lt;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